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u>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u>기술자문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u> ----- ----- <u>기술자문위원회</u> ----- ----- <u>관한</u> ----- ----- -----.
제2조(적용범위) 이 <u>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u> (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u>영 제19조부터 제22조</u> 및 다른 법령에서 <u>위원회의</u>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u>대하여</u>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u>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u> (이하 ‘법’, ‘영’, ‘시행규칙’----- <u>영</u>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 <u>기술자문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u>대해</u>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u>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u> <u>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u> 사업부서의 <u>장이</u>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u>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u> <u>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u> 사업부서의 <u>장이</u>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UPA), 부산항만공사(BPA) 등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 또는 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사업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4. “위원회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

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 또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4. “위원회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

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
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
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
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
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
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
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
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
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
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
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
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
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
-----.

1. 영 제19조제3항-----

--. ---- 기술자문위원회 위
원장(이하 ‘위원장’-----

----- 경우는 -----.

가. ~ 파. (생략)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
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
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4. 삭제

5.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
청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
을 심의한다.

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
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
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작성
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용역사업의 기술자
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대
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
기준,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심
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가. ~ 파.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3. -----
----- 관련
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

5. -----
-- 회의에 부치는 -----

② ----- 사안
에 대해 심의한다.

1. -----
----- 기
술제안입찰에 대한 입찰안내
서 -----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
인평가서·기술제안서 -----

--- 입찰공고안-----

3. ----- 심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p>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심의</p>	<p>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5항-----</p> <p>-----</p> <p>---- <u>대한</u> -----</p> <p>-----</p>
<p>4. 설계변경 심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u>100억원</u>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4. -----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p> <p>-----</p> <p>----- <u>100억 원</u> -----</p> <p>-----</p> <p>-----</p> <p>--</p>
<p>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p>	<p>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8항-----</p> <p>-----</p> <p>-----</p>
<p>6.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6. -----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p> <p>-----</p> <p>-----</p>
<p>7.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 영 제75조 규정에 따라 검토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p>	<p>7. ----- 심의: -----</p> <p>-----</p> <p>-----</p>

의견이 합의·결정이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8.·9. (생략)

10.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
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11. (생략)

12.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
성 검토에 관한 사항

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
한 사항

<신설>

<신설>

8.·9. (현행과 같음)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
사업자 -----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
찰제 세부심사기준-----

11. (현행과 같음)

12. -----
----- 수립해야 -----

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 대신할

-- 대해 -----

14.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
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
정성에 관한 사항

15.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
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p>1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u>관하여</u>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u>사항</u>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u>기술자문위원회</u> <u>회</u>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p> <p>제6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u>기술자문위원회</u> 위원</p> <p>2. 3. (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산항건설사무소</u>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u>위하여</u> 5급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두고, 6급 이하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둔다.</p>	<p><u>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u></p> <p>16. ----- ----- <u>관해</u> ----- ----- -- <u>사항</u> 및 <u>국가계약법</u> ---- ----- <u>위원회</u> ----- ----- -----</p> <p>제6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① ----- -- <u>1명</u>----- ----- ----- -----.</p> <p>1. ----- ----- ---- <u>위원회</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 <u>부산항건설사무소장</u> (이하 ‘소장’이라 한다)----- ----- --. ----- <u>위해</u> ----- ----- -----.</p>
---	--

③ 위원은 영 제19조 제1항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수산부 건설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특급기술자의 자격이 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단서 신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

③ ----- 영 제19조제1항-----

사람을 --.

1. -----

----- 특급기술인-----

2.-----

----- 3급 -----
----- . 다만, 3급 기술 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 교수 또는 「고등교

<p>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 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 부교수 · 조교수</p>	<p>육법」 제2조 ----- ----- -----</p>
<p>4.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 험이 있는 <u>자</u></p>	<p>4. ----- ----- ----- <u>사람</u></p>
<p>5.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 험이 있는 <u>자</u></p>	<p>5. ----- ----- ----- <u>사람</u></p>
<p>6. <u>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 축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 한 자</u></p>	<p>6. <u>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u></p>
<p>7. 해당 심의와 <u>관련하여</u> 심의 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u>자</u></p>	<p>7. ----- <u>관련해</u> ----- ----- ----- <u>사람</u></p>
<p>8. (생 략)</p>	<p>8. (현행과 같음)</p>
<p>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및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해박 한 지식이 있는 <u>자</u></p>	<p>9. ----- ----- ----- <u>사람</u></p>
<p>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 정성 및 형평성 등을 <u>고려하여</u>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 도록 한다.</p>	<p>④ ----- ----- <u>고려해</u> -- ----- ----- ----- -----.</p>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제10조의2에 따른 해촉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할 경우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단서 신설>

⑤ -----
연임-----

----- 남
은 임기-----.

⑥ ----- 위해
----- 경우
에는 다른 발주청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
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
-- 범위-----.

⑦ 위원회 구성-----
----- 영 제19조제1항제1호--
----- 위원회 위원

-----.

제6조의2(위원의 등록 및 공개)

① -----
---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
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

----- 심사해 -----
----- . 다만, 부득이한

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새로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② -----
---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

제6조의3(위원의 준수사항) ① -----
----- 관한 -----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 관련해 -----

----- 신고해야 -----.

③ -----

--- 위해 -----
----- 제출해야 -----.

제7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① -----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
 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
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위
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
 리 단계나 한차례만 자문을 요
 청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
 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
 업 진행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중간·마
 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
 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
 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
 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8조(위원 선정) ① 위원회는 안

----- 받으려는

----- 별지 제2호 서

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

----- 장에 자문(심
의) 등을 요청해야 ----. ----

----- 제출해야 ----

---.

② -----

----- 위해 -----

해야 ----.

③ -----

----- 시작한 -----

----- 작성해 -----

----- 제출해야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 선정) ① -----

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1의 위원 선정 세부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전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전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의 시급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촉한 위

----- 고려해 5명 -----
-----.

-----.

② -----

-----.

참여해야 -----

-----.

③ ----- 선
----- 정해 ----- 명확히
기록한 회의 개최 계획-----
----- 통지
해야 -----.

-----.

④ -----

원에게 별표 2의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안이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위원 선정 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전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사항은 안전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 배포해야 -----.

⑤ ----- 서면 회의로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해야 하며 ----- 적합성을 ----- 선정해야 -----.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 사항에 대해 안전별 소위원회 -----.

② ----- 위원장 -----.

③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 안전에 따라 위원수를 증·감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 4. (생략)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

증감할 -----.

④ ----- 자문 -----

-----.

⑤ 소위원회-----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5. ----- 5년 -----

6. ----- 대해 -----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전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

7. -----

----- 관한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회피 ----- 제출해 -----
------(回避)해야 -----
-----.

④ -----

----- 발생한 -----
-----.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

----- 반해 -----
-----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4. ----- -- <u>관련해</u> ----- ----- -----
5.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u>아니하여</u>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u>제10조제1항</u> ----- ----- ----- <u>않아</u>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u>학력</u>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 <u>학력</u>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9. <u>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u>	<삭 제>
제11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u>위원회 운영에 있어</u> <u>적정한</u> 시간이 확보되도록 <u>사전에</u> 위원을 확정하	제11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① ----- <u>위원회</u> <u>를 운영할 때 적절한</u> ----- ----- <u>미리</u> -----

고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제4조제2항제14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개최 5일 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③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전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 배포해야 -----.

② -----

----- 해야 -----.

1. -----
대해 -----

2. -----
----- 대해 -----

----- 검토해 -----

③ -----
----- 출석해 -----
----- 설명해
야 ----- 용역사
업자에게 -----
-----.

④ -----

----- 참석해 -----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
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
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
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
기술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자문(심의)위원은 자문(심의)자
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
술자문(심의) 등 검토서를 위원
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
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효
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
계 등 용역업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

----- 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 청취) -----
----- 위해 -----

----- 해 그

-----.

제13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①

----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

② -----

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부서 조치의 건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 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 등 개최 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최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

----- 설명해야 -----
-----.

③ -----

구분해 별지 제8호 -----

----- 구분해야 -----.

제14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 -----

----- 명확히 기록한 -----

----- 보내야 -----.

----- 보
내야 -----

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자문사안의 경우 해당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1인 이상을 출석으로 개최하고, 제5조 제2항 각 호의 심의사안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5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

-----.

②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자문 또는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해야 한다. -----

----- 제8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과의 체계적합성 -----

----- 제시해야 ----.

③ ----- 제5조제1항 -----

----- 제5조제2항 -----

제15조(심의사항의 의결) ① ---

----- 1명 -----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에 대한 가·부결처리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 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

--- 심의사안을 ---

-----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

② -----

--- 구분해 의결해야 ---

1. -----

----- 경미해 -----

2. “조건부 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

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안
(“서면보완“) 또는 해당 심의
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
하는 방안(“공동검토 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른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
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
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

<신 설>

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
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
----- 중대해 -----

----- 대해 과반수 -----

-----.

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
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
결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
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③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 등 용역업자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문

마련되어 건설공

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지만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기

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
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
고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
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

----- 진행해야
-----.

⑤ -----

--- 구분해 -----

의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0호 서
식에 따라 추가 의견 및 의결사
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1. 검토 적용 :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
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
다.)가 적정하여 관계자가 제
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
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

3. 재검토 : 검토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한 경
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
요 분야별 심의결과에 대한 검
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
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 작성해 -----
-----.

1. --- 적용: -----

--- 적정해 -----

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 ----

3. 재검토: -----
충분하지 않거-----

⑥ ----- 채택 또는 조건부 적
정-----

----- 충분하지 않아

•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자문의 경우,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문 등 결과 조치)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

⑦ -----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

-----.

-----.

⑧ -----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

-----.

제16조(자문 등 결과 조치) ① --

----- 대해 --

----- 작성해 -----
-----.

② -----

---- 날-----

----- 통보해야 -----.

③ -----

--- 없으면 -----

----- 반영해야 -----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 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중간·마무리단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

----- 날-----

----- 제출해야 -----

---. -----

----- 필요시 -----

----- 제출해야 -----

---.

④ -----

----- 주관해 -----

----- 제9조제2항-----

----- 보고해야 -----.

제17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 실시해야 -----.

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2. (생략)

3.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
설의 건설공사

4. (생략)

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
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 7. (생략)

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생략)

2.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3. 환경 여건, 교통 여건,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물 조사, 해당
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인
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 7. (생략)

8. 특허·신기술 및 특정 자재
채택 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
과의 부합성

9.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
성, 공인성, 등록 여부 등 프로
그램 선정의 적정성

--.

1. ----- 요구하는

2. (현행과 같음)

3. ---- 요구하는 -----

4. (현행과 같음)

② -----
-- 대한 -----.

1. ~ 7.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평면계획, 종단계획 및 ----

3. -----
----- 지장물(支障物) ---

4. ~ 7. (현행과 같음)

8. ----- 자재
를 채택할지 -----

9. -----
-- 공인성 -----

10. · 11. (생 략)

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 5. (생 략)

6.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결과 확인

7. ~ 12. (생 략)

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15 개정”)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확인

15. · 16. (생 략)

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18. (생 략)

⑤ 설계 등 용역업자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 자문부터 자문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검토, 보완, 반영

10. · 11. (현행과 같음)

④ -----
--- 대한 -----.

1. ~ 5. (현행과 같음)

6. ----- 적산(합산) -----

7. ~ 12. (현행과 같음)

13. 용역사업자-----
“전자설계도서 작성 · 납품지침”-----

14. -----
--(국토교통부)-----

15. · 16. (현행과 같음)

17. -----
----- 건설관련 사업자----- 적정하였는지

18. (현행과 같음)

⑤ ----- 용역사업자-----

후 해당위원회에 확인을 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
·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환경·사회·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서의 장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⑥ ----- 따른 -----

-----.

1. -----
----- 따른 -----

2.·3. (현행과 같음)

4. ----- 따른 -----

5. (생략)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⑦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하천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부의할 안전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⑨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

5. (현행과 같음)

6. -----

----- 위해 -----

----- 필요한 -----

⑦ -----

----- 따른

허가·인가·승인 -----

포함해야 한다.

⑧ ----- 부칠 -----

-----.

⑨ -----

----- 따라야 -----.

제17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

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3.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 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

-- 위해 -----
----- 대해 -----
-----.

1. -----
----- 위해 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

2. ----- 않거-----

----- 인한 --
----- 건설엔지니어링

3. -----

-- 위해 -----

4. -----
----- 건설엔지니어링

② -----

----- 요약
해 -----
제출해야 -----.

제17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

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 포함)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 포함)
3. 건설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4. (생략)
5. 해당 설계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

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

----- 중 같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 않는 -----.

② -----

----- 대해 -----

---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

1. -----
--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2. -----(산출근거를 포함한다)

3.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4. (현행과 같음)

5. --- 설계내역서 -----
--

6. (생략)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청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

6. (현행과 같음)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

----- 이의 -----
----- 위원회 -----
-----.

제18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

제19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

----- 대해 -----
----- 심의해야 -----.

② ----- 사업부서의 장 -----

표”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입찰 유의사항·공사계
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총공사비 산출근거를 사
전에 제시받아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부합 여부

3. 설계기간 : 이미 시행된 유사
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
여 최소 설계기간 확보의 적
정성

4. 공사기간 : 유사한 공사의 실
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
준비기간, 인·허가에 소요되
는 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
기간 등의 고려사항 적정성

5. ~ 7. (생략)

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

--- 대해서는 접수일-----

----- 개최해 -----

----- 통보

해야 ----.

1. ---- 참가하려는 -----

-- 자세히 알아야 -----

2. ----- 적정성: -----

----- 위

해 ----- 미

리 -----

3. 설계기간: -----

----- 비교해

--

4. 공사기간: -----

----- 비교해 -----

----- 인가·허가에 필요

한 -----

5. ~ 7. (현행과 같음)

8. ----- 입찰참가업체 -----

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9. 그 밖에 발주청장이 필요하
여 제시한 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
해 통보된 심의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하
여 발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술용역 기술자평가
서·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
은 영 제52조 제7항에 따른 기
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
서(TP)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별표
5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건설기
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해
양수산부)”에 따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
준 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별
표 5에서 정하는 기술평가의 방
법·기준 및 난이도 대상기준과
달리 조정하여 기술평가를 추진
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
여부 및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이 기술된 입찰공고안의 적정

9. ----- 필요해 -

③ ----- 따
라 ----- 대해 --
----- 보완해
발주 요청해야 -----.

제20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
가서·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
역 적정성 심의) ① -----
-- 영 제52조제7항에 따른 기술
인평가서-----

---- 참고해 결정하고 『건설기
술용역사업 평가기준 매뉴얼』
(해양수산부)-----
----- 작성해야 -----.
②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
준 매뉴얼』(해양수산부) ----

---- 조정해 -----
----- 대상
인지 -----
-----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훈령)의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 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2. (생략)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

정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
--.

제20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
----- 대해
심의를 받아야 --.

제21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

-----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 원 -----
-----.
----- 원 미만-----

-----.

1. 2. (현행과 같음)

3. -----

----- 조정은

-- 인해 -----

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
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4. 시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법
· 기술 · 자재로 변경 시에 적
정성 여부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설계변경(계약금액 조
정)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
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
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
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

----- 대해 -----

--

4. -----
-----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

② -----

-- 따른 -----
----- 작성해 -----
----- 제출해야
-----.

제22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2조에 따라 -----

----- 영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
----- 중대해 ---

----- 관한 -----
-----.

의 대상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 7. (생략)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의 채택·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

1. (현행과 같음)

2. -----

----- 5억 원 -----

② -----

----- 요청해야 -----.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③ -----

-----.

1. 참여기술인-----

2.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

----- 위해 -----

요청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 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 7. (생략)

제25조(실시설계 적격 심의)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입

----- 대해 -----
--.

② -----

날-----
-- 해야 ----.

③ -----

-- 제출해야 ----.

1. -----
----- 장단점-----

2. ~ 7. (현행과 같음)

제25조(실시설계 적격 심의) ① -----

-- 대해 -----.

② -----

찰 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 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 주관부서가 일괄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 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 있는지 -----

-----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

-----.

③ ----- 심의사항을 -----
-----.

-- 해서-----.

④ -----
-----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

--- 확정해 -----

----- 의결해야 -----.

1. 설계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설계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 부적격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1. --- 적격: -----

----- 75점으로 한다
----- 의결.

2. --- 부적격: -----
----- 중대해 -----

----- 않다
고 -----

----- 75점으
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 ----- 따
른 ----- 할 때는 -----
----- 대
해 -----

--.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 참가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 변경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활용 운영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른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

⑥ -----
----- 입찰참가업체에게 -----

----- 해야 -----
--.

제26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

----- 위원회-----
-----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

-----.

② -----

----- 요청한다. -----

----- 요청-----
-----.

③ -----

---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결

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신설>

참여 하는 공사)----- 1억 원 -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하려는 경우

2.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업체에게 실시설계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3(건설사업관리계획 적

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는 법 6
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
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
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
업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
한다)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
설공사 중 사업부서의 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
공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
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
식에 관한 사항

<p>제27조(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① <u>영 제73조 제2항에 따</u></p>	<p>3. <u>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u></p> <p>5. <u>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u></p> <p>6. 「<u>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u>」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u>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7. <u>그 밖에 적절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u>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에는 심의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해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u></p> <p>제27조(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① <u>영 제73조제2항-----</u></p>
--	---

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
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 및 실
시설계비 예산 요구 전 별지 제
4호 서식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기본 원칙) ① 위원회 주
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설
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는 위
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
해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현
장시공 실태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등 지
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
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은 보완
등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방법) ① 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
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재보완 하도
록 할 수 있다.

-- 대해 -----.

② -----

----- 작성해 --
----- 해야 -----.

제28조(기본 원칙) ① -----

---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 노력해야 --
---.

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현
장시공실태 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시 자문 등 지적사
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
완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관리방법) ① -----

----- 부족한 -----
----- 보완하도록 -
-----.

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관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

3.·4. (생략)

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

② -----

-- 작성·관리해야 -----.

③ -----

-----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
-----.

④ -----
----- 대해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해 -----
-----.

⑤ -----

-----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
-----.

1. (현행과 같음)

2. ----- 다른 -----

3.·4. (현행과 같음)

⑥ ----- 위해 -----

----- 작성해야 -----.
----- 고려해 -----

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9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0호 서식)등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30조(회의록)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 일시, 장소, 참여 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자문 등 위원별 발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질문서, 설계 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참석자 명단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6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

-----.

⑦ -----
----- 위해 -----

-----.

제30조(회의록) -----
----- 대해 -----

----- 보존해야 -----.

제31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① -----
----- 범위 -----
----- 장은 별표 6을 참고 해 지급할 수 있다. -----

----- 관련해 -----

<p>석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 기준을 <u>새로이</u> 정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32조(재검토 기한) <u>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부칙 제2019호 (생 략)</p>	<p>----- <u>그렇지 않다.</u></p> <p>② -----</p> <p>-----</p> <p>-----</p> <p>----- <u>새로</u> -----.</p> <p>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p> <p>제32조(재검토 기한) <u>소장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u></p> <p>-----</p> <p>-----</p> <p>-----</p> <p>-- <u>검토해</u> -----</p> <p><u>해야</u> ----.</p> <p>부칙 제2019호 (현행과 같음)</p>
--	---